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＝(양도가액－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\* )×세율 \*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｢상속세 및 증여세법｣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.